

150317 인권선언 초안 성안 4차 회의 속기록

참석 : 류은숙, 김일란, 정경원, 박상은, 두인, 푸우, 미류, 윤지영, 박은희

미류 : 인권선언에 들어갈 원칙을 검토, 권리목록의 열개 검토합니다. 점심 먹고 이어서 오후까지 진행합니다.

류은숙 : 인권선언에 들어갈 원칙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에 준비하는 분들도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 올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6 인권선언의 기본원칙, 발제)

미류 : 책임까지 발제하고 토론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_ 책임에 관하여, 발제) 인용 부분은 야스퍼스와 아이리스영이 쓴 책에서 인용한 것임. 책임은 원칙으로 담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은숙이 발제한 3가지 원칙 토론하고 이어서 책임에 관해 토론

<원칙>

은숙 : 꼭 넣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

미류 : 원칙을 한 문장 정도로 뽑는 것으로 맞췄는데,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이 한 문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발제 내용 전체가 선언문에 들어가는 것인가

은숙 : 전체가 들어간다. 한 줄로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유엔 등에서 나오는 원칙도 보통 이 분량으로 작성된다.

미류 : 인권선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한 문장으로 들어가고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토론 자료로 들어가면 좋겠다. 가급적 인권선언문은 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푸우 : 형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은숙은 완결적인 형태를 고려하고 있고, 미류는 토론을 위한 자료를 염두한 것 같다.

푸우 : 은숙의 글 정도 분량으로 선언문에 들어가면 좋겠다. 책임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다.

은숙 :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줄일 수는 있으나 한 줄로 처리할 수는 없다. 다만 문장 중 '사물화', '기초' 이런 단어의 의미는 교육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지영 :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사람의 생명 부지 말고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담기면 좋겠는데... 다 담겨져 있다.

미류 : 취약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면 좋겠다.

은숙 : 취약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보호는 별도 조항으로 빼는 것이 좋겠다. 원칙에는 평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안에서 더 취약한 계층과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담는 것이 선언의 기본 골격이다. 원칙에서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취약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보호를 원칙에 함께 담으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미류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푸우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큰 틀에서 담는 것이 좋겠다.

상은 : 저도.

미류 : 불평등을 없애 나가는 것이 이 인권선언의 취지이나 과제인데 '평등한 사회는 더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더 불안하다' 이하에 담겨 있으므로 그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겠다.

푸우 : 미류가 지적한 부분은 교육 자료로 담는 것이 좋겠다.

미류 : 질문, 모든 인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인가.

은숙 : 그렇다. 모든 인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미류 : 인권에 대한 권리라고 표현하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푸우 : 그 부분은 '모든 인간은 권리로 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은숙 : 분량은 에이포 반 페이지 분량으로 줄이겠다. 의문시 되는 부분은 교육 자료에 담아야 한다.

푸우 : 인간은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교육 자료에 담아야 한다.

상은 : 저도

은숙 : 이 부분은 칸트의 개념이다.

미류 :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두인 : 기업과 정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권리를 가지는 개인이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관해 논리적으로 토론해 보면 좋겠다.

미류 : 연대 부분이 책임과 연결된다. 기업과 정부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책임보다는 의무로 정리하면 어떨까

경원 : 이 부분은 책임 부분으로 넘기면 좋겠다.

미류 : 연대의 원칙이라고 서술되는 부분에서는 연대가 재난 참사에 대해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두인 : 권리에겐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

지영 : 그 부분이 저 역시 고민이다. 권리와 책임,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데 선언을 읽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일단 나는 권리로 표현했다.

상은 :, 성찰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 재난에 대한 대응과 대비의 책무, 책임이라는 말을 보다 권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은숙 : 권리와 의무는 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를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의무에 대한 정부의 불순한 의도와 구분하고자 '연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정부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로 표현

미류 : 의무와 책임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은숙 : 용어를 통일한다면 책임이라는 표현이 낫다. 우리가 언급하는 책임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보다 광의의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책임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책무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효율성, 담보성 등을 언급하는 오염된 언어가 되었으므로 책무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영 : 연대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프다는 인간 본연의 특성임. 재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것임.

두인 : 책임은 개인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

은숙 : 책임을 원칙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데 원칙에 넣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류 : 책임을 원칙에 넣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오히려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책임을 원칙으로 제시할 때 정치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일란 : 존엄성과 평등은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서술된 연대의 원칙은 본래적인 의미를 강조하다기 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래적인 성격이 강조되면 좋겠다.

경원 : 연대 부분에서 책임을 빼 버리면 연대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하고 공허해진다.

미류 : 책임을 따로 빼기 보다는 연대의 원칙에 담아서 정리하자.

미류 : 어느 정도 제안문에 담을지 고민이 된다. 이후 진행될 풀뿌리토론을 염두에 둘 때 핵심 문장이 압축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좋겠다.

은숙 : 줄이려 하겠다. 다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각자 문장을 작성해 오면 좋겠다. 정리.

<재난>

상은 : (재난, 발제)

지영 : 중대사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는?

상은 : 재난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 경우의 의미. 그런데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것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지영 : 중대재해는 규모라기 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뜻하는 것인가

푸우 : 그렇다.

지영 : 사고를 피해자 개인에게 맡기기 어려운 공동체가 분담해야 하는 것을 아우르는 의미?

상은 : 그렇다.

경원 : 지금 나온 재난에 대한 정의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원인을 가지고도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

푸우 : 아차사고에서부터 원인에 대한 정부에 책임은 있음

미류 : 참사라는 개념

은숙 : 경미, 중대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푸우 :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와 사고를 구분.

은숙 :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은 : 용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해 오겠다.

<피해자>

일란 : (피해자_발제)

미류 : 재난 참사의 정의를 염두하면서 검토해 보자.

지영 : 참사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인데, 참사는 정부나 공동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결과 역시 피해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참사의 피해자로 포함시키면 좋겠다.

푸우 : 발제문에 기재된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피해를 입은 자'가 정확하다.

일란 : 성폭력 관련 판결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고통을 함께 하는 자도 피해자다.라고 정의

미류 : 권리 목록을 검토하기 전에 피해자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란 : 피해자 규정을 하려다 보니 상관 관계 속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국제 범죄라던가,,, 관련 개념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임

미류 : 구조하러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란 : 1차 피해, 2차 피해로 보통 나눠서 본다.

미류 : 나눠서 검토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세월호 잠수사의 경우 2차 피해자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

푸우 : 피해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개념을 줄이고 있다.

일란 : 그래도 피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호해 질 수 있다.

지영 : 보통 구조 구급요원, 재난지역 주민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다.

은숙 :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제원칙에서 뽑아내고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키거나 뺄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점심식사)

미류 : 전체 발제를 한 후에 열개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이어서 내용을 검토하자

은숙 : (권리목록 _ 발제)

경원 : (구조와회복_발제)

지영 : (재난대응, 회복과지원_발제)

푸우 : (안전과 건강에 관한 권리 _발제)

미류 : 열개를 어떻게 할지 토론해 보자. 권리에 방점을 두되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원칙으로 올리면 좋겠다.

지영 : 회복과 지원의 원칙은 전체 인권선언의 원칙으로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은숙 : 일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구분한 이유는 참사의 특성에 따른 것. 참사 발생 이전의 예방에 관한 것은 일반 권리로, 참사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권리는 별도의 항목으로. 일반적인 권리의 목록이 나열되어야지만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일반 권리도 담아야. 국가와 사회를 섞게 되면 국가의 책임이 모호해지므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주체별로 장을 나누자.

미류 : 권리를 집중해서 밝히는 것으로. 의무는 서술 방식을 압축해서 하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로 크게 나누고 의무를 책임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자.

미류 : 정보에 관한 권리는 안전, 예방과 대응 모두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를 하나로 묶어 버리게 되면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지점에서 정보에 관한 권리가 드러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 그냥 나열하지는 말자.

은숙 : 일반적인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나눴는데 이것을 다시 카테고리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미류, 푸우 : 권리와 의무 외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권리, 의무 안에서 예방-진상규명-대응-회복지원의 틀에 맞춰 재구성해 보자.

경원 : 그렇게 되면 주체가 뒤섞이지 않을까.

미류 : 뒷부분에는 재난 이후의 대응이 주로 들어갈 것이다.

예은엄마 : 섞여서 들어가도 좋겠다. 참사 전 - 참사 - 참사 후로 나누는 게 좋다.

푸우 :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음. 권리와 의무로 나눌 경우 기본적인 권리로 나눌 경우, 예컨대 의견과 표현의 자유/사상이 어디에 대응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음

미류 : 모든 인권을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종교의 자유는 인권선언에 담을 필요는 없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후에 토론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떨지

푸우 : 권리와 의무를 나누고 권리를 보호와 예방 -구조-진상규명,재발방지 -치유와 재활로 나누자
지영 : 그렇다면 권리의 내용과 의무의 내용이 중복되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미류 : 그렇다. 대신 의무에 관한 부분은 보다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듯
경원 : 일반적인 권리 항목을 따로 떼어내도 좋겠다. 왜냐하면 참사에 있어서 피해자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까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환기할 수 있다.
은숙 : 재난 피해자의 피해 지점을 드러낼 필요와 이견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두 부분이 충돌된다.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류 : 시간 순으로 배열하게 될 경우 예방과 안전 부분에서 일반적인 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영 : 발생한 참사에 대한 정보, 의견 개진, 감시에 관한 것은 모든 이들의 권리이다.
예은엄마 : 너와 나를 구분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당사자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좋겠다.
미류 : 다음 회의 때까지 주체와 권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배치를 고려해서 안을 마련해 오겠다. 이후에 체계와 내용에 관해 토론하자. 최대한 짧게 하고 여기에 내용을 붙이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 보자. 결국 오늘 나온 자료를 편집하는 일이 남아 있다.
두인 :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담으면 좋겠다.
은숙 : 단순히 구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망자와 산자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해서 용어를 필요 있음. 전반적인 표현에서 염두할 부분이다.
미류 :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도 죽은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은숙 :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애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임
예은엄마 :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민들은 외곽에 지어지길 바라는 현실. 이번 기회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경원 :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
예은엄마 : 원칙 관련해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하나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닌지.
은숙 :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은숙 : 열개에다가 일단 다 넣고 이후에는 빼는 작업을 하자. 기초 선언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 오겠다. 미류도 미류가 제안한 방식에 맞게 준비해 오시라.
미류 : 의무와 책임은 다시 정리해야
은숙 : 의무와 책임 부분은 각자 영역을 나눠서 추가하는 것으로
미류 : 일단 발표할 때까지는 권리 중심으로.. 발표 이후에 4월 14일 이후에 의무와 책임을 넣는 것은 어떨까
은숙 : 의무와 예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준비해 오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온 칼럼이나 글 등을 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요구 사항을 정리해 오자
두우 : 그건 내가 하겠다.
은숙 : 모든 문건에 작성자 이름과 가져온 자료의 경우 출처를 꼭 명시할 것

(토론 끝)

미류 : 토론은 마쳤고. 제정위원회 준비회의에 40여명 정도 참석했다. 제정위원회 준비회의에서는 제정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시민 참여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우려가 있었다. 제정위원 참여자의 역할은 기획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4.14.에는 '제안문'의 형식으로, 내용은 완성된 형태로 제안. 4.14.에 모인 사람은 제안을 받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제안하자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제안이 발표가 되면 하나하나 토론하는 자리가 5.9.에 개최될 예정. 4.14. 이전에 재난안전가족협의회와 416가족협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필요. 4.14.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해야 할지
은숙 : 대표 용어(참사, 피해자)에 관한 규정은 나와야 한다. 원칙은 간단히 줄이고 설명 자료는 따로 마련.
미류 : 준비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언에 담으면 좋겠는 내용을 정리했음. 각자 한 번씩 검토할 것. 5.9.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토론의 길잡이가 될 만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
은숙 : 토론 규캔에이를 만들고 300명이 분야별로 나눠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은엄마 : 참사에 대한 느낌을 카드로 나열하고 가장 공감하는 느낌을 고르거나 빠진 것을 정함. 원인,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전 논의. 토론할 때에는 사전 논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색다른 것을 가지고서 토론. 조별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뽑고 뽑은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전체 토론. 4시간 정도 토론을 했음. 설문지 항목을 열거하고 그것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권리, 원칙, 의무에 들어갈 것을 정리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토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할 거리를 던져 주는 것

은숙 : 먼저 준비한 질문 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덧붙이고 싶은 질문을 추가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서 토론하는 방식이 좋겠다. 이후의 간담회나 토론에서도 큐앤에이 형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미류 : 연말까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의견을 잘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시인권현장에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었다고 함.

지영 : 서울시인권현장에서의 집단토론 방식을 확인해 보겠다.

예은엄마 : 5.9. 토론 방식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미류 : 이 토론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기획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

은숙 : 일단 우리는 제안문을 잘 만드는 데에 집중하자.

미류 : 다음 회의는 24일에,

은숙 : 다음 주에는 두 개의 안을 놓고 뼈대를 확정. 전문과 원칙에 대한 수정안 검토, 의무와 책임에 관해 토론 . 의무와 책임 중 규약 등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내가, 두인이 한국사회에서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오기로

미류 : 31일에는 모든 것의 수정안을 가지고서 전체 토론을 종일 진행하는 것으로. 다음 주에는 3시까지 진행